

심사보고서

충청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충청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690
----------	-----

2021. 4. 30.(금)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 2021년 4월 13일

다. 회부일자 : 2021년 4월 16일

라. 상정일자 : 2021년 4월 22일

- 제39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 상정·의결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수정가결)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오세동 행정국장)

가. 제안사유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안 제1조)
-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 사항 및 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중복감사 방지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위원과 위원장·상임위원의 임명, 의안의 발의,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제7조)
- 사무국의 조직 및 정원(안 제8조)
- 위원의 수당 및 여비, 지급 절차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1조)
- 실무협의회 구성, 간사,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12조~제14조)
- 자치경찰사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안 제15조)
-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소속 경찰공무원 후생복지 지원(안 제16조)
- 위원장의 도의회 출석·답변(안 제17조)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남범우)

- 이 조례안은 「경찰법」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2020.12.22.) 되어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 사항과 범위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에서는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 사항 및 범위를 별표로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 사항과 범위

는 자치경찰위원회가 충청북도경찰청장과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였고,

[별표] 【 자치경찰사무의 범위 (요약)】

가. 지역내 주민의 생활안전 활동에 관한 사무

- 1) 생활안전을 위한 순찰 및 시설의 운영
- 2) 주민참여 방법활동의 지원 및 지도
- 3) 안전사고 및 재해·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 4) 아동·청소년·노인·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 업무 및 가정·학교·성폭력 등의 예방
- 5)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질서의 유지 및 그 위반행위의 지도·단속 (다만,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행정청의 사무는 제외한다)
- 6) 그 밖에 지역주민의 생활안전에 관한 사무

[별표] 【 자치경찰사무의 범위 (요약)】

나. 지역 내 교통활동에 관한 사무

- 1)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지도·단속
- 2) 교통안전시설 및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심의·설치·관리
- 3)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 및 홍보
- 4) 주민참여 지역 교통활동의 지원 및 지도
- 5) 통행 허가, 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 긴급자동차의 지정 신청 등 각종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무
- 6) 그 밖에 지역 내의 교통안전 및 소통에 관한 사무

다.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 관리

-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등의 교통질서 확보 및 교통안전 관리 지원
-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안전 관리 지원

- 안 제3조에서는 중복감사를 방지하기 위해 경찰청장과 협의하여 감사계획을 수립·실시하도록 하였으며,
- 안 제4조에서 제7조까지는 위원과 위원장·상임위원의 임명방법, 의안의 발의 및 상정,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한 사항을,
- 안 제8조에서는 사무국의 조직 및 정원으로서 사무국장이 상임위

원을 겸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안 제9조에서 제11조까지는 위원의 수당 및 여비, 지급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 안 제12조에서 제14조까지는 실무협의회는 위원회, 충청북도, 경찰청으로 구성하고, 간사 및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을,
 - 안 제15조에서는 자치경찰사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을,
 - 안 제16조에서는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소속 경찰공무원에게 후생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하였음.
- ▶ 다만, 안 제16조‘위원회 사무국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지원’을 정함에 있어, 표준조례안에서는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 되어 있고, 충청북도 조례안에는 ‘위원회 사무국 소속 경찰공무원’로 규정하였는데, 이와 대하여 관련 부서에서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안 제17조에서는 도의회 요구시 위원장의 출석·답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이 조례안은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등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됨.
- 다만, 현 자치경찰제에서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분리하는 이

원화 방안이 아니라 경찰 조직내에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함께 근무하면서 각자 업무를 보는 형태로서, 기존 국가사무는 경찰청장, 수사사무는 국가수사 본부장, 자치사무는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감독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경찰사무의 복합성으로 인해 지휘·감독체계의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은 필요해 보이고,

- 또한, 자치경찰제는 그동안 전국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던 치안서비스를 지역 특성 및 주민 요구를 반영한 생활밀착형 치안서비스로서 지역 생활안전 및 긴급구조, 교통, 경비, 여성청소년 등 지역민과 밀접한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제도 시행과정에서 도민의 혼란을 최소화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 제2조제2항 중 “들어야 한다”를 “청취한다”로 한다.
- 제3조제2항 중 “위원회규칙(이하 “위원회규칙”이라 한다)”을 “위원회규칙”으로 한다.
- 제5조제2항 중 “상임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을 “상임위원”으로 한다.

○ 제8조제1항 중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을 “사무국”으로 한다.

○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충청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충청북도 소속 공무원이 적용 받는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다만,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에도 「경찰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과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등에 의한 유사 지원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원안)」
- 「충청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수정안)」

의안번호	제 690 호
의 결 연 월 일	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21년 4월 13일

법무혁신담당관 심사를 마칩

충청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690
----------	-----

제출연월일 : 2021년 4월 13일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안 제1조)
-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 사항 및 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중복감사 방지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위원과 위원장·상임위원의 임명, 의안의 발의,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제7조)
- 사무국의 조직 및 정원(안 제8조)
- 위원의 수당 및 여비, 지급 절차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1조)
- 실무협의회 구성, 간사,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12조~제14조)
- 자치경찰사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안 제15조)
-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소속 경찰공무원 후생복지 지원(안 제16조)
- 위원장의 도의회 출석·답변(안 제17조)

3. 의안전문 : 붙임

4. 비용추계서 및 자원 조달방안 : 붙임

5.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6. 관계법령 발췌 : 붙임

충청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생활안전·교통·경비 관련 자치경찰사무의 범위 등) 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및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 사항과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②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별표 1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영 제2조제2호에 따라 자치경찰사무가 적정한 규모로 정해지도록 미리 기간을 정하여 충청북도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영 제2조제3호에 따라 자치경찰사무가 국가경찰사무와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다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사무와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조(중복감사의 방지) ① 위원회는 영 제2조제3호에 따라 중복감사를 방지하기 위해 경찰청장과 협의하여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감사계획을 수립·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감사의 절차와 방법 등은 법 제24조 제1항제12호에 따른 위원회규칙(이하 “위원회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제4조(위원회 위원의 임명방법) ① 법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원을 추천하는 자는 추천하는 사람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 및 결격사유 유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위원으로 추천받은 사람이 법 제20조제2항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같은 조 제7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해당 사실을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임명방법) ① 도지사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원을 임명하고 위원 중 1명을 위원장으로 임명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임명된 위원장은 신속하게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회는 해당 회의에서 상임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 선정을 의결한다.

제6조(의안의 발의 및 상정) ① 위원은 재적위원 2명 이상의 찬성으로 법 제24조에 따른 위원회 소관 사무 범위에서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단독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발의된 의안을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정기회의 또는 임시회의에 상정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고문 등을 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국의 조직 및 정원) ① 법 제27조 및 영 제18조에 따른 사무기구의 명칭은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으로 하며, 사무국에는 사무국장을 두고 이는 상임위원이 겸임한다.

② 사무국의 조직·정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른다.

제9조(위원의 수당) ①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1. 참석수당: 위원회에 위원이 출석하여 심의·의결·자문 등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

2. 심사수당: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미리 자료를 수집하거나 회의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

3.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수당

② 원거리에 거주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참석수당 지급 시 교통비, 식비(급량비 기준 단가 적용), 숙박비를 실비의 범위에서 따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여비)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출장할 때에는 3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지급 절차 등)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위원의 수당 및 여비 등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실무협의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경찰청 등과 실무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위원회, 충청북도,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소속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회는 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간사) ① 실무협의회에 실무협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 사무국 소속 과장이 된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협의회의 구성, 회의개최,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충청북도 및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15조(예산) ① 위원회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27조제1항에서 도지사가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도록 정한 기한의 45일 전까지 자치경찰사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기 전에 예산안을 경찰청장에게 통보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6조(위원회 사무국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 사무국 소속 경찰공무원에게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경찰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과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등에 따른 경찰청의 유사 지원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17조(위원장의 의회 출석·답변) 위원장은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도의회가 요구하면 출석·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위원장은 상임위원 또는 위원회 소속 공무원에게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생활안전, 교통, 경비 관련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 사항 및 범위
(제2조제1항 관련)

가. 지역 내 주민의 생활안전활동에 관한 사무

자치경찰사무	범위 기준	구체적 사항 및 범위
1) 생활안전을 위한 순찰 및 시설의 운영	가) 지역 주민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 시설 설치·운영	① 범죄취약지역 환경 개선 등 지역 범죄 예방환경설계(CPTED) 사업 추진 ②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지원
	나) 지역 주민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진단	① 지역·건물의 범죄취약요소 현장진단 및 점검·관리 ② 범죄예방 우수시설 인증 시행 ③ 범죄예방 강화구역 관리 등 범죄예방진단팀(CPO) 운영
	다) 지역 주민 안전을 위한 순찰과 범죄예방활동 시행·관리	① 시기별·테마별 범죄예방활동 시행·관리 ②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지역안전순찰 등) 제도 시행 ③ 은행·편의점 등 현금다액 취급업소 범죄예방활동 시행
2) 주민참여 방법활동의 지원 및 지도	가) 범죄예방을 위한 주민 참여 지역 협의체 구성·운영	생활안전협의회, 자율방범대 등에 대한 협업 및 지원·지도
	나) 주민 참여형 범죄예방활동 시행·관리	① 지역주민 대상 범죄예방요령·범죄예방교실·시민경찰학교 등 홍보활동 ② 주민 참여형 범죄예방활동(합동순찰 등)
3) 안전사고 및 재해·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구조지원	①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안전사고 및 재해·재난 발생 시 지역주민 안전확보를 위한 긴급구조지원

	<p>나) 재해 발생 시 지역의 사회 질서 유지 및 교통관리 등</p>	<p>① 재해발생지역의 사회질서 유지 ② 재해발생지역의 교통관리 등</p>
	<p>다) 그 밖에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서의 긴급구조지원 활동 등</p>	<p>그 밖에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서의 지역 내 긴급구조지원 활동 등</p>
<p>4) 아동·청소년·노인·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 업무 및 가정·학교·성폭력 등의 예방</p>	<p>가) 아동·노인·장애인 학대 예방과 피해 아동·노인·장애인에 대한 보호활동</p>	<p>① 아동·노인·장애인 학대 예방활동(교육·홍보 등) ② 아동·노인·장애인 학대 사안대응(가·피해자 조사 등) ③ 아동·노인·장애인 학대 피해자 보호기관 등 연계·지원 ④ 아동·노인·장애인 학대 관련 학대예방경찰관(APO) 운영</p>
	<p>나) 아동·청소년·노인·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의 실종 예방·대응 활동</p>	<p>① 지문 등 사전등록 업무 ② 실종·유괴 경보 체계 구축·운영 ③ 실종아동등 조기발견 지킴 대상시설 지도·감독 ④ 유전자 채취 및 보호시설 등 일제수색 운영</p>
	<p>다) 아동 대상 범죄예방 및 아동안전 보호활동</p>	<p>① 아동안전지킴이 운영 및 선발·배치·감독 ② 아동안전지킴이집 관리 및 운영·교육·홍보 ③ 아동 대상 범죄예방 및 아동안전 보호활동</p>
	<p>라)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보호 활동</p>	<p>① 청소년 비행방지, 선도·보호활동 ② 위기청소년(가·피해학생, 학교·가정 밖 청소년 등) 면담·관리 ③ 위기청소년 발굴(거리상담 등) 및 유관기관 연계 ④ 소년범 선도제도 운영(선도프로그램, 선도심사위원회, 전문가참여제, 우범소년 송치) ⑤ 경찰의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에 대한 청소</p>

		년 참여 제도 운영(정책자문단 등)
	마) 가정폭력범죄 예방과 피해자 등 보호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가정폭력 예방활동(교육·홍보 등) ② 가정폭력 (긴급)임시조치 ③ 가정폭력 피해자 상담·보호기관 등 연계·지원 ④ 가정폭력 사안대응(협업회의 참석, 가·피해자 조사 등) ⑤ 가정폭력 관련 학대예방경찰관(APO) 운영
	바) 학교폭력의 근절·예방과 가해학생 선도 및 피해학생 보호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학교폭력 예방활동(교육·홍보 등) ② 학교폭력 사안대응(학폭위 참석, 117사안대응, 가·피해학생 조사 등) ③ 청소년육성회 등 지역 내 학교폭력 유관단체와 협업 업무 ④ 청소년경찰학교, 명예경찰소년단 운영 ⑤ 학교전담경찰관(SPO) 운영
	사) 성폭력 예방과 성폭력 피해자 등 보호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성폭력범죄 예방활동(교육·홍보 등) ②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아) 그 밖에 관련 법령에 경찰의 사무로 규정된 아동·청소년·노인·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 및 가정폭력·학교폭력·성폭력 등 예방 업무	그 밖에 관련 법령에 경찰의 사무로 규정된 아동·청소년·노인·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 및 가정폭력·학교폭력·성폭력 등 예방 업무
5)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질서의 유지 및 그 위반행위의 지도·단속 (다만,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행	가) 경범죄 위반행위 지도·단속 등 공공질서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경범죄 위반행위 단속(과태료 등 지자체 행정처분 사항 제외) ② 지역 내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주민 대상 계도 및 홍보
	나) 공공질서에 반하는 풍	① 풍속사범의 지도·단속

정청의 사무는 제외한다)	속·성매매사범 및 사행행위 지도·단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② 성매매 단속 ③ 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 보호 ④ 사행행위 지도·단속
	다) 그 밖에 관련 법령에 경찰의 사무로 규정된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질서의 유지 및 그 위반행위의 지도·단속 업무	그 밖에 관련 법령에 경찰의 사무로 규정된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질서의 유지 및 그 위반행위의 지도·단속 업무
6) 그 밖에 지역주민의 생활안전에 관한 사무	가) 지역주민의 생활안전 관련 112신고(일반신고를 포함한다)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가정폭력, 학교폭력, 아동학대, 실종 등 자치경찰 수사사무 관련 신고 처리 ② 풍속영업, 기타경범, 주취자 등 지역 질서유지 관련 신고 처리 ③ 분실습득, 보호조치, 상담문의 등 지역 주민의 생활안전 관련 신고 처리
	나) 지하철, 내수면 등 일반적인 출동이 어려운 특정 지역에서 주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를 위한 경찰대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지하철경찰대 설치·운영(수사 제외) ② 내수면경찰대 설치·운영 ③ 관광경찰대 설치·운영
	다) 유실물 보관·반환·매각·국고귀속 등 유실물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유실물 처리업무 계획 및 지도·감독 ② 습득물·분실물 신고접수 및 보관 ③ 유실자 확인 및 습득자 소유권 취득 시 물건 인계 ④ 법정기간 만료 시 국고·금고 귀속, 폐기 등 처리 ⑤ 유실물 관리 시설의 설치 및 운영
	라)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에 따른 응급구호대상자에 대한 보호조치 및 유관기관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응급구호대상자 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 긴급구호 요청 및 인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 ② 응급구호대상자 휴대 무기·흉기 임시영치 ③ 주취자응급의료센터 운영 지원 ④ 그 밖에 응급구호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조치

	마) 그 밖에 관련 법령에 경찰의 사무로 규정된 지역주민의 생활안전에 관한 사무	그 밖에 관련 법령에 경찰의 사무로 규정된 지역주민의 생활안전에 관한 사무
--	--	---

나. 지역 내 교통활동에 관한 사무

자치경찰사무	범위 기준	구체적 사항 및 범위
1)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지도·단속	가) 교통법규 위반 지도·단속, 공익신고 처리 등	① 음주·무면허 등 교통법규 위반 단속 ② 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 처리(단, 불법 주정차 신고의 경우 관할 지자체에 통보) ③ 기타 교통법규 위반신고 처리(영상단속, 방문 신고 등)
	나) 음주단속 장비 등 교통경찰용 장비 보급·관리·운영 등	① 음주단속장비 등 구매·보급 ② 음주단속장비 등 점검·교정 ③ 음주단속장비 등 노후장비 교체
2) 교통안전시설 및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심의·설치·관리	가) 교통사고 예방, 교통소통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운영	① 교통안전시설 운영계획 수립 ② 교통신호기 설치·관리·운영 ③ 교통안전표지 설치·관리 ④ 교통노면표지 설치·관리 ⑤ 교통안전시설 및 유사 교통안전시설 무단 설치 단속 ⑥ 그 밖에 도로 위험 방지와 교통안전 및 원활한 소통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관련 조치
	나) 도로교통 규제 관련 지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지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구성 ② 도로교통 규제 및 교통안전시설 설치여부의 심의·결정
	다)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심의·설치·관리·운영	① 무인 교통단속용장비의 설치·관리·운영 ② 무인 교통단속용장비의 우선 설치장소 선정 심의

3)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 및 홍보	가)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	① 지역주민 대상 교통안전 교육계획 수립·시행 ② 교안, 리플렛 등 교육자료 제작·배포
	나) 교통안전에 대한 홍보	① 지역주민 대상 교통안전 홍보계획 수립·시행 ② 교통안전 홍보물품 구매·보급
4) 주민참여 지역 교통활동의 지원 및 지도	가) 교통활동 지원 협력단체에 대한 운영·관리에 대한 운영·관리	① 모범운전자회·녹색어머니회 등 교통활동 지원을 위한 운전자 모임 및 학부모단체 구성 ② 모범운전자회·녹색어머니회 등 교통활동지원을 위한 운전자 모임 및 학부모 단체의 교통안전 지원활동 관리
	나) 주민참여형 교통안전활동 지원 및 지도	① 무사고 운전자 선발·관리 ② 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홍보·안내
5) 통행 허가, 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 긴급자동차의 지정 신청 등 각종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무	가) 차마의 안전기준 초과 승차, 안전기준 초과적재 및 차로폭 초과 차 통행 허가 처리	① 안전기준 초과승차 허가 신청서 접수·허가증 발급 ② 안전기준 초과적재 허가 신청서 접수·허가증 발급 ③ 차로폭초과차 통행 허가 신청서 접수·허가증 발급
	나) 도로공사 신고접수, 현장 점검 및 지도·감독 등	① 도로점용허가 필요 조치 ② 도로공사 신고 관련 교통안전 및 원활한 소통을 위한 필요 조치
	다)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신고 접수·관리 및 관계 기관 합동 점검	①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접수 및 신고증명서 발급·재교부 ② 관계부처 합동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점검 및 계도·단속
	라) 긴급자동차의 지정 신청·관리	① 긴급자동차 지정증 신청서 접수·지정증 발급 ② 긴급자동차 지정증 재교부 신청서 접수·지정증 발급 ③ 긴급자동차 지정 취소 및 지정증 회수

	<p>마) 버스전용차로 통행 지정 신청 처리</p>	<p>① 버스전용차로 통행 지정신청서 접수·지정증 발급 ② 버스전용차로 통행 지정증 재교부 신청서 접수·지정증 발급 ③ 버스전용차로 통행 지정 취소 및 지정증 회수</p>
	<p>바) 주·정차 위반차량 견인대행법인등 지정</p>	<p>① 견인대행법인등 지정신청서 접수·지정증 발급 ② 견인대행법인등 지정 취소·정지 및 지정증 회수</p>
<p>6) 그 밖에 지역 내의 교통안전 및 소통에 관한 사무</p>	<p>가) 지역주민의 교통안전 관련 112신고(일반신고를 포함한다) 처리</p>	<p>① 교통사고, 사망·대형사고 신고 처리 ② 음주운전, 교통위반 신고 처리 ③ 교통불편 신고 처리</p>
	<p>나) 운전면허 관련 민원 업무</p>	<p>① 운전면허 발급·재발급·갱신 신청·접수·교부 ② 운전면허 적성검사 신청·접수 ③ 국제운전면허 신청접수 및 교부 ④ 운전경력증명서 발급 ⑤ 기타 운전면허 관련 민원 업무</p>
	<p>다) 지역교통정보센터 운영 및 교통정보 연계</p>	<p>① 지역교통정보센터 운영 ② 교통정보 연계(경찰청 도시교통정보센터 등과의 연계)</p>
	<p>라) 정체 해소 등 소통 및 안전 확보를 위한 교통관리</p>	<p>① 출·퇴근 시간대 및 상습 정체 구간 주요 교차로에서의 교통관리 ② 안전사고·재해·재난 발생 시 이동로 및 안전 확보를 위한 교통통제 및 관리</p>
	<p>마) 지역 내 교통안전대책 수립·시행</p>	<p>① 시기별·취약 대상·위험요인별 지역내 교통안전대책 수립·시행 ② 지역 교통안전협의체 구성·운영 등 교통안전 분야 유관기관 협업</p>
	<p>바) 교통안전 관련 기관 협의 등</p>	<p>① 지역 교통영향평가, 교통성 검토 등 교통소통 관련 협의 ② 「도로법」 제48조에 따른 자동차전용도로 지정 등 관련 협의(도로관리청이 국토부장관인 경</p>

		우는 제외) ③ 「교통안전법」상 안전진단, 사고조사 관련 협의 ④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른 보호구역의 지정 등 관련 협의 ⑤ 그 밖에 지역 내의 교통안전 및 소통에 관한 사무
--	--	--

다.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 관리

자치경찰사무	범위 기준	구체적 사항 및 범위
-	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등의 교통질서 확보 및 교통안전 관리 지원	① 다중운집 행사장 주변 주요 교차로 소통 확보를 위한 교통관리 지원 ② 행사장 주변 보행자 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활동 지원
	나.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안전 관리 지원	①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계획 수립 지원 ② 행사장 주변 안전사고 예방 및 질서유지를 위한 안전활동 지원

비고 : 위 표의 나목 지역 내 교통 활동에 관한 사무 중 「도로교통법」 제2조제 3호의 고속도로에서 이루어지는 사무는 제외한다.

[별표 2]

수당의 지급기준(제9조제1항 관련)

1. 참석수당

구분	단위	기준 단가	비고
위원회	일당	· 기본료: 150,000원 · 초과 : 50,000원	· 초과는 2시간 이상 시 1일 1회만 지급한다.

2. 심사수당 및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수당 : 위원회 예산 범위에서 위원회 의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 가능

비용추계서 및 재원 조달방안

1. 재정수반요인

- 가. 발생요인 : 자치경찰사무의 수행, 사무국 설치,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 나. 관련조문 : 제2조(생활안전·교통·경비 관련 자치경찰사무의 범위 등), 제7조(사무국), 제8조(위원의 수당), 제11조(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등에 대한 지원)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1) 추계대상 : 위원회 소관 사무 처리를 위한 기본 운영경비, 사무실 설치 소요되는 경비
- 2) 추계불가 : 자치경찰사무 수행경비*,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소속 경찰공무원 후생복지 지원** 경비

* 법 제34조에 따라 국가에서 의무 지원하는 경비로서, 비용 산출 후 '22년부터 지원 예정

** 지원여부에 대해서는 별도 검토 필요(임의규정)

나. 추계 결과 : 5년 간 31억원정도

【 연간 소요금액 】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합 계	3,109,574	996,232	520,603	525,758	530,913	536,068
운 영 비	2,509,574	396,232	520,603	525,758	530,913	536,068
사무실 설치	600,000	600,000	-	-	-	-

※ 적용 : 3년 간 평균 물가상승률(1.0%), '21년도 운영비 8월분 적용

※ 인건비는 충청북도 정원관련 조례 개정시 계상

다. 재원 조달방안 : 도비 100% * 추후 국비지원 검토(중앙부처 협의 중)

비용추계의 상세내역(위원회 운영비)

□ 세출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내역	산출액	
		1년간	'21년(8개월)
총 계		515,448	996,232
위원회 운영	○ 위원회 운영 - 회의운영 26,500천원(의안제작, 자료수집, 장비유지 등) - 위원수당 30,000천원(참석수당, 실비보상) - 사무운영 71,500천원(홍보비, 실무협의회, 인사위원회, 현안 중요 사건 대응, 사무감사 운영 등)	128,000	105,800
	○ 관서운영경비 - 업무추진비, 부서여비, 사무관리비 등 387,448천원	387,448	290,432
	○ 사무실 설치 - 임대보증금 및 임차료, 관리비 237,500천원 - 정보통신 설치, 컴퓨터 구입 등 112,500천원 - 사무기구가전, 냉난방기 및 리모델링 등 250,000천원	-	600,000

관련법령 발췌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령 21. 1. 11)

제4조(경찰의 사무) ① 경찰의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가경찰사무: 제3조에서 정한 경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 다만, 제2호의 자치경찰사무는 제외한다.

2. 자치경찰사무: 제3조에서 정한 경찰의 임무 범위에서 관할 지역의 생활안전·교통·경비·수사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무

가. 지역 내 주민의 생활안전 활동에 관한 사무

- 1) 생활안전을 위한 순찰 및 시설의 운영
- 2) 주민참여 방법활동의 지원 및 지도
- 3) 안전사고 및 재해·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 4) 아동·청소년·노인·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 업무 및 가정폭력·학교폭력·성폭력 등의 예방
- 5)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질서의 유지 및 그 위반행위의 지도·단속. 다만,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행정청의 사무는 제외한다.
- 6) 그 밖에 지역주민의 생활안전에 관한 사무

나. 지역 내 교통활동에 관한 사무

- 1)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지도·단속
- 2) 교통안전시설 및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심의·설치·관리

- 3)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 및 홍보
- 4) 주민참여 지역 교통활동의 지원 및 지도
- 5) 통행 허가, 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 긴급자동차의 지정 신청 등 각종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무
- 6) 그 밖에 지역 내의 교통안전 및 소통에 관한 사무

다.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 관리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사사무

- 1) 학교폭력 등 소년범죄
- 2) 가정폭력, 아동학대 범죄
- 3) 교통사고 및 교통 관련 범죄
- 4) 「형법」 제245조에 따른 공연음란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따른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에 관한 범죄
- 5) 경범죄 및 기초질서 관련 범죄
- 6) 가출인 및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등 관련 수색 및 범죄

② 제1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제2호라목의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임명 및 결격사유) ① 시·도자치경찰위

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1. 시·도의회가 추천하는 2명
2. 국가경찰위원회가 추천하는 1명
3. 해당 시·도 교육감이 추천하는 1명
4.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2명
5.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1명

②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경찰의 직에 5년 이상 있었던 사람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등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법률학·행정학 또는 경찰학 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있었던 사람
4. 그 밖에 관할 지역주민 중에서 지방자치행정 또는 경찰행정 등의 분야에 경험이 풍부하고 학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

③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하고, 상임위원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한다.

④ 위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 제52조 및 제57조를 준용한다.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그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위원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에는 당연퇴직한다.

1. 정당의 당원이거나 당적을 이탈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 있거나 그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직원 또는 군인의 직에 있거나 그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국립 또는 공립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만, 제2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된 경우에는 당연퇴직하지 아니한다.
5.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1조제1호 단서에 따른다.

⑧ 그 밖에 위원의 임명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한다.

제26조(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회의는 정기적으로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 2명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및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 그 의견을 듣거나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③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직무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한다.

제27조(사무기구) ①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필요한 사무기구를 둔다.

② 사무기구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③ 제주특별자치도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이 법 제27조제2항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④ 사무기구의 조직·정원·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한다.

□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1. 1. 1)

제2조(생활안전·교통·경비 관련 자치경찰사무의 범위 등) 「국가경찰과 자

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 등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지켜야 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에 따른 경찰의 임무 범위와 별표에 따른 생활안전, 교통, 경비 관련 자치경찰사무의 범위를 준수할 것
2. 관할 지역의 인구, 범죄발생 빈도 등 치안 여건과 보유 인력·장비 등을 고려하여 자치경찰사무를 적정한 규모로 정할 것
3. 기관 간 협의체 구성, 상호협력·지원 및 중복감사 방지 등 자치경찰사무가 국가경찰사무와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사항을 포함할 것
4. 자치경찰 사무의 내용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데 효율적인 것으로 정할 것

제4조(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임명방법 및 절차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이하 “시·도자치경찰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을 임명하기 위하여 법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 추천권자(이하 이 조에서 “추천권자”라 한다)에게 위원으로 임명할 사람의 추천을 요청해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임기 만료 30일 전까지 추천권자에게 위원으로 임명할 사람의 추천을 요청해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지체 없이 결원된 위원을 추천한 추천권자에게 위원으로 임명할 사람의 추천을 요청해야 한다.

④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신분과 직급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며, 위원의 임명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5조(실무협의회) ①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수행, 국가경찰사무·자치경찰사무의 협력·조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6조(위원의 수당 등) ①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상임위원에 준하여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당 등의 지급기준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7조(운영규정)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충청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수정안)

충청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들어야 한다”를 “청취한다”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위원회규칙(이하 “위원회규칙”이라 한다)”을 “위원회규칙”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상임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을 “상임위원”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을 “사무국”으로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충청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충청북도 소속 공무원이 적용받는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다만,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에도 「경찰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과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등에 의한 유사 지원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수정안 신·구조문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p>제2조(생활안전·교통·경비 관련 자치경찰사무의 범위 등) ① (생략)</p> <p>②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별표 1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영 제2조제2호에 따라 자치경찰사무가 적정한 규모로 정해지도록 미리 기간을 정하여 충청북도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p> <p>③ (생략)</p> <p>제3조(중복감사의 방지) ① (생략)</p> <p>② 제1항에 따른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감사의 절차와 방법 등은 법 제24조제1항제12호에 따른 <u>위원회규칙(이하 “위원회규칙”이라 한다)</u>으로 정한다.</p> <p>제5조(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임명방법) ① (생략)</p> <p>② 제1항에 따라 임명된 위</p>	<p>제2조(생활안전·교통·경비 관련 자치경찰사무의 범위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 ----- ----- ----- ----- ----- <u>청취한다.</u></p> <p>③ (현행과 같음)</p> <p>제3조(중복감사의 방지)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 <u>위원회규칙</u> ----- ----- -----</p> <p>제5조(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임명방법) ① (현행과 같음)</p> <p>② -----</p>

원장은 신속하게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회는 해당 회의에서 상임위원(이하 “상임위원” 이라 한다) 선정을 의결한다.

제8조(사무국의 조직 및 정원)

① 법 제27조 및 영 제18조에 따른 사무기구의 명칭은 사무국(이하 “사무국” 이라 한다)으로 하며, 사무국에는 사무국장을 두고 이는 상임위원이 겸임한다.

② (생략)

제16조(위원회 사무국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 사무국 소속 경찰공무원에게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경찰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과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등에 따른 경찰청의 유사 지원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신설>

----- 상임위원 -----

제8조(사무국의 조직 및 정원)

① -----

사무국-----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지원)

① -----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충청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충청북도 소속 공무원이 적용받는 ----. <단서 삭제>

② 다만, 제1항에 따라 지원

하는 경우에도 「경찰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과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등에 의한 유사 지원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